

예 산 총 칙

제1조.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의 2025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제2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	330,300,000 원	세출	330,300,000 원
----	---------------	----	---------------

제3조. 2024년도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수입 자부담 경비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사업 및 후원목적사업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세출예산의 전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2.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6조. 장기요양기관회계 예비비는 5,286,824 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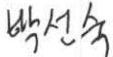
제7조. 예산전용이 긴박한 경우 대표가 우선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도록 한다.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책	구분
양재용	74.09.13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3길 7	시설장	
박선숙	79.01.06	울산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17, 110호	직원	
류인례	48.12.10	울산 울주군 삼남읍 중평2길 14	전문가	
정호선	80.01.15	울산 울주군 삼남읍 하방로16	지역주민	
이수복	50.06.28	울산 울주군 언양읍 현양길100	후원자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



2024. 12. 22 일

양재용 

2025년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 세입 예산액(1월~12월)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이용자 부담금 수입	이용비용 수입	본인 부담금	44,142,228	본인부담금(20명) : 3,678,519 *12개월 = 44,142,228		
				: 66,770 * 22 일 * 3 명 * 15% = 661,023		
				: 66,770 * 20 일 * 4 명 * 15% = 801,240		
				: 54,320 * 22 일 * 6 명 * 15% = 1,075,536		
				: 54,320 * 20 일 * 7 명 * 15% = 1,140,720		
요양급여 수입	요양급여 수입	장기요양급여	250,139,292	요양급여수입(20명): 20,844,941 *12개월 = 250,139,292		
				: 66,770 * 22 일 * 3 명 * 85% = 3,745,797		
				: 66,770 * 20 일 * 4 명 * 85% = 4,540,360		
				: 54,320 * 22 일 * 6 명 * 85% = 6,094,704		
				: 54,320 * 20 일 * 7 명 * 85% = 6,464,080		
		가산금	36,000,000	가산금수입 3,000,000 *12개월 = 36,000,000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18,480	- 개인차입금 = 18480		
합 계			330,300,000			

2025년 바른재가노인복지센터 세출 예산액(1월~12월)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사 무 비	인 건 비	급여	233,601,600	인건비(기본급)			
				- 사회복지사			
				: 2,091,800	*	1 명 12 개월=	25,101,600
				- 센터장			
				: 1,500,000	*	1 명 12 개월=	18,000,000
				- 대표			
				: 1,000,000	*	1 명 12 개월=	12,000,000
				- 요양보호사			
				: 875,000	*	17 명 12 개월=	178,500,000
				70시간(대상자평균방문시간)*12,500원=875,000)			
		상여 및 수당	13,840,080	- 명절비(간접비2/대표,선테장)			
				: 1,250,000	*	0.6 * 2명=	1,500,000
				- 명절비(직접비/사회복지사)			
				: 2,091,800	*	0.6 * 1명 =	1,255,080
				- 명절비(직접비/요양보호사)			
				: 875,000	*	0.6 * 17명 =	8,925,000
				- 자격수당(사회복지사, 센터장)			
				: 80,000	*	12 개월 =	960,000
				- 가족수당(사회복지사)			
				: 100,000	*	12 개월 =	1,200,000
		퇴직 적립금	19,466,800	- 퇴직적립금(대표,센터장 2명의 12개월보수합)=			
				: 30,000,000	/	12 =	2,500,000
				- 퇴직적립금(요양보호사, 17명의 12개월보수합)=			
				: 178,500,000	/	12 =	14,875,000
				- 퇴직적립금(사회복지, 1명의 12개월보수합)=			
				: 25,101,600	/	12 =	2,091,800
		사회 보험 부담금	19,599,696	- 사회보험(종사자3명, 대표, 센터장, 사회복지사)			
				국민연금	:	107,144 2 12	2,571,456
				건강보험	:	70,000 3 12	2,520,000
				장기요양	:	10,920 3 12	393,120
				고용보험	:	15,000 3 12	540,000
				산재보험	:	3,880 3 12	139,680
				- 사회보험(요양보호사)			
				국민연금	:	20,000 17 12	4,080,000
				건강보험	:	30,590 17 12	6,240,360
				장기요양	:	3,960 17 12	807,840
				고용보험	:	9,910 17 12	2,021,640
				산재보험	:	1,400 17 12	285,600
과	목		금 액	사 출 내 역			

관	항	목	단	계	계
사무비	유 영 비	업무 추진비	3,600,000	- 기관운영비 : 200,000 * 12 회 = 2,400,000 - 회의비 : 100,000 * 12 회 = 1,2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7,380,000	- 사무용품비 : 200,000 * 12 회 = 2,400,000 - 소모품비 : 200,000 * 12 회 = 2,400,000 - 사무기기 관리비 : 100,000 * 12 회 = 1,200,000 - 인터넷/전화/팩스 : 100,000 * 12 회 = 1,200,000 - 정수기 : 15,000 * 12 회 = 180,000	
		공공 요금 및 공과금	1,925,000	- 차량보험 : 800,000 * 1 회 = 800,000 - 전기요금 : 50,000 * 12 회 = 600,000 - 단체상해공제 : 10,000 * 20 명 = 200,000 - 배상책임공제 : 25,000 * 20 명 / 2 = 250,000 - 신원보증보험 : 25,000 * 3 명 = 75,000	
		차량비	4,800,000	- 차량유류비 : 200,000 * 12 회 = 2,400,000 - 차량유지비 : 200,000 * 12 회 = 2,400,000	
		임차료	4,800,000	- 건물임차료 : 400,000 * 12 개월 = 4,800,000	
		기타 운영비	2,400,000	- 요양보호사복지후생(교통비) : 200,000 * 12 개월 = 2,400,000	
	사 업 비	요양 사업	6,400,000	- 대상자방문선물 : 200,000 * 12 개월 = 2,400,000 - 명절지원사업 : 200,000 * 20 대상자 = 4,000,000	
		재산조성비	차량구입비	7,200,000	- 차량구입비 : 600,000 * 12 = 7,2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286,824	- 예비비 :	5,286,824
합 계			330,300,000		